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84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이원택·한병도·이춘석

신영대 • 윤준병 • 박희승

이성윤 · 김윤덕 · 송재봉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의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역구시·도의원정수 산정 규정은 시·도별로 동일한 면적이나 인구라 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 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자치구·시·군의 인구 5만명을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는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

로 변경하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5만명"을 각각 "4만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범위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①		
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			
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			
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			
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			
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			
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			
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			
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			
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			
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i		
다만, 인구가 <u>5만명</u> 미만인 자	<u>4만명</u>		
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u>4만명</u> -		
인구가 <u>5만명</u> 이상인 자치구·			
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			
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
	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
	<u> 어야 한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